



관세청



수신 한국관세사회장

(경유)

제목 요수 및 요소수 수출통관 관련 협조 요청

1. 항상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「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(산업부 고시)」 및 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(환경부 고시)」 시행('21.11.11.)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3.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통관 관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요소 및 요소수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, 해당 사항을 전국 관세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요소 및 요소수 수출통관 기준

○ (원칙) 요소* 및 요소수** 수출신고 시 수리거부

* 「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2조, HSK 3102.10-9000에 해당하는 물질

** 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2조,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으로 HSK 3102.10-9000에 해당하는 요소수

○ (예외) 산업부·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

○ (목록통관 제한)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정식통관절차 적용
끝.

